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은 전자문서 수·발신, 행정전자서명 발급(GPKI) 등에 필요한 조직·직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다수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유통·관리하는 시스템임

현행법은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내 외국인 직원의 행정전자서명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어 업무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가기준데이터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없어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애로 발생

이에, 정부디렉토리시스템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안 제90조제7항 개정)

-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까지 확대함

나.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제9항 신설)

-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정보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국가기준 데이터관리시스템에서 이용·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7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생 략)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 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u>주민등록번호</u>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 ----- ----- ----- ----- <u>주민등록번호</u> 또는 <u>외국인등록번호</u>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u>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2717